

그렇게 가물던 대지에 이 아침 눈이 내린다. 봄을 준비하는 눈이다.

고성신문이 태어났다. 태어남은 축복을 의미한다. 태어남은 존재되어진 것이고, 그것은 유형이든 무형이든 사람과의 교류를 의미한다.

수많은 TV의 채널을 보면서, 각양각색의 신문과 각 지역의 정보를 접하면서 진작 내가 태어난 내 고향에는 言路(언로)의 황무지였음이 가슴 아팠다.

이제 오랜 산고의 고통을 겪고 '고성신문'이 탄생했다. 고성신문의 창간이념은 다음과 같다.

1. 행복한 고성 만들기

행복이란 추상적인 개념이며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다. 각자의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다.

그러나 이 행복이라는 추상명사를 보통명사화해서 이 지역이 타 지역과 차별화된 名品(명품)을 만드는 일, 그 일을 해 낼 것이다. 언론이라는 매체를 통하여.

2. 행정과 주민의 가교

행정은 나라에서 뽑은 인재들이 여론을 수렴하고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기관이다. 불철주야 주민의 편에 서서 일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의 편에서 본 행정은 때론 답답하고, 짜증나고, 느리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서로 반목하고 질시한다. 고성신문은 양자의 구도 속에서 점진

적으로 협조하고 사랑하는 문화를 만들 것이다. 고성이라는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한 식구이다.

3. 등잔 밑을 밝히는 신문

등잔 밑이 어둡다는 속담이 있다. 고성신문은 KBS1의 '인간극장' 이야기처럼 소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알릴 것이다. 어느 자그마한 산골에서 소신껏 일하

남숙희 칼럼

시인



태어남에 대하여

시는 동네 이장님의 근황도 들려 드리고, 소외받고 사랑받지도 못하는 장애인들의 이야기도 실을 것이다.

현대 마스크는 속빈 강정처럼 흥행과 여론몰이에 익숙해져 있지만, 고성신문은 이른 봄날 눈발에서 피어나는 노란 복수꽃처럼 작은 것에도 충실하는 모범적인 신문이 될 것이다.

긍정적으로 이 신문의 역할은 풍요롭고 잘 사는 고성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많은 관심과 배려와 사랑받기를 원하면서, 끝으로 유홍준씨가 한 말을 음미해 본다.

'알면 보이고, 보이면 사랑한다.'

남숙희 칼럼위원 약력

- 고성태생
- 고성고 졸업
- 동국대 국어국문학과 및 동대학원 졸업
- 고교 교사생활 30년
- 〈한글문학회〉로 시 등단

● 박형수 변호사의 생활법률



책임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문)저의 부친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개인 비용으로 치료를 받아오던 중 보험회사에 대하여 책임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책임보험금지급청구를 하였는데, 보험회사는 책임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데, 법률상 책임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지요?

답)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는 자동차보유자 및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자동차대여사업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건설기계대여업자 등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지급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조는 보험가입자 등에게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사업자 등에 대하여 상법 제7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 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 제41조에 의하면 보험금 청구 등의 시효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면 강제되는 강제(의무)보험에 의하여 보험사업자 등에게 직접 행사할 수 있는 책임보

험금의 청구는 사고발생시로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상법 제724조 제2항은 책임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피해자인 제3자가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판례의 경향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자에 갖는 직접청구권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판시하

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가해자 측(가해운전자, 가해차량소유자 등)뿐만 아니라 가해차량보험회사를 상대로도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박형수 법률칼럼위원 약력

- 고성고 24회 졸업
- 고려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 박형수 법률사무소 대표

고성신문 정기구독자를 모집합니다

고성신문은 '행복한 고성 만들기 · 행정과 주민의 가교 · 등잔 밑을 밝히는 신문' 이란 창간이념으로 새롭게 창간한 지역 주민들의 신문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정기구독이 고성신문을 키우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료 납부방법

- ① 핸드폰 자동결제
- ② 통장 자동이체
- ③ 일반구독

◇구 독 료 : 월 4,000원(1년 선금 4만원)

◇입금계좌 : 농협 301-0072-9350-81

◇예 금 주 : 주식회사 고성신문

주식회사 고성신문

문의 ☎033-681-1667